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적,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출연 하기로 한 지역협력사업비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으로 활용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- 사하구 금고업무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
- 기금의 운용 수익금, 기타 수익금

나.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-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·관리를 위한 사업
- 문화예술관련 공연, 전시, 강좌 등 개최 및 지원

다.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- 심의기구 :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- 심의사항 :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(제142조)

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안은

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적,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시 출연키로 한 지역협력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금을 설치·운영 하려는 것으로

□ 적법성 부분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보면 「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,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

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」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고 있으며

총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도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어 있음.

□ 기금의 재원조달 부분은

2007. 11. 7 금고업무취급 약정시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향후 3년간 총 170,000천원의 지역협력사업비를 우리구에 출연키로 되어 있어 기금의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《지역협력사업비 출연 약정내용》

(천원)

구 분	계	2008년	2009년	2010년
계	170,000	68,000	51,000	51,000
부산은행	70,000	28,000	21,000	21,000
우리은행	100,000	40,000	30,000	30,000

□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

생활체육의 활성화, 문화예술의 진흥, 인적자원개발 등 대부분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「지방자치법」과 「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규정한 공익상 필요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음.

이밖에 기금의 심의, 기금의 결산 등 조례안의 제반내용도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.

2008. 4. 22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

《 관 계 법 령 》

지방자치법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▷ 따로붙임